



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

문서번호	토목과-12865
결재일자	2014. 12. 10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토목팀장	토목과장	안전건설교통국장	
박주범	신근주	박주완	전결 12/10 안대회	
협조				

「마장동 399-96 ~ 399-61간 도로개설 실시설계용역」
건설기술 자문위원회 결과 보고

2014. 12.



성 동 구

(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)

건설기술 자문위원회 결과 보고

마장동 399-96 ~ 399-61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관련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

■ 용역개요

- 용역명: 마장동 399-96 ~ 399-61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
- 계약금액: 18,130천원
- 계약기간: 2014. 7.30 ~ 2014.12.15
- 계약사: (주)대륜엔지니어링 대표 이상훈
- 과업내용
 -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
 -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,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
 - 도로옹벽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설계
 - 공사비 산출 및 기본 공정표 작성
 -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(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포함) 등

■ 자문회의 개요

- 일시: 2014. 12. 9(화) 10:00 ~ 12:00
- 장소: 안전건설교통국장실(2층)
- 안건
 - 기본계획 및 설계지침 검토
 - 기존시설물 및 옹벽 구조물 검토
 - 시설물의 규모,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등
- 참석자
 - 공무원: 안전건설교통국장, 토목과장, 치수방재과장, 토목팀장
 - 위원: 외부위원 3명
 - ▶ 박건순(도로및공항기술사), 성돈(토목구조기술사), 나상호(토목시공기술사)
 - 용역사: (주)대륜엔지니어링 책임기술자 최종덕 외 1인

■ 위원별 검토의견

위 원 명	검 토 내 용	비 고
건설교통국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형, 연결도로, 연립주택 주차장 등을 고려한 선형 선택이 필요하고 불가피하게 설계기준을 지키지 못 할 경우에는 미끄럼방지포장, 반사경, 과속방지턱 등 안전대책을 수립 할 것 - 또한,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업(도로의 형태)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필요함 - 노면수 처리에 대한 설계보완 필요 	
박 건 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곡선 미달구간 및 접속교차로 구간 안전대책 필요 (미끄럼방지포장, 과속방지턱 등) - 교차로 구간 노면배수(집중호우 시) 등을 고려한 배수 계획 요망 - 포장 계획은 최근 설계지침에 맞게 검토요망 - 교차로구간, 설계기준 미달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부대시설계획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	
성 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마조로 1길 연결부 교차로에 대한 동절기 도로결빙 시 차량 미끄러짐에 대한 도로 및 구조물에 대한 안전 대책 수립 - 보강토 옹벽 도면에 보강토체의 재질 및 다짐방법을 Note 처리하여 안전시공이 되도록 할 것 - 층다짐의 높이는 보강토 블럭과 연계하여 시공성이 용이하도록 할 것 - 옹벽 형식은 설계서 제안이 타당함 	
나 상 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단구배 및 종곡선 계획에 대하여는 기존의 주택조성으로 인한 주민 생활편의 등을 고려하여 계획 1안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단, 과속방지턱 및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(과속방지턱, 미끄럼방지 시설, 반사경 등)확보 요망 - 급경사로 인한 노면수 처리와 옹벽2 지점의 사유지내 낮은 부분의 배수처리 계획 필요함 - 옹벽시설에 대하여는 옹벽1, 옹벽2 구간은 기초터파기 및 지반상태 고려 와 미관을 고려한 보강토 옹벽시공이 적절하며 연립주택측 절토구간은 R.C옹벽 적정함(옹벽 3,4,5) 	

위 원 명	검 토 내 용	비 고
치수방재과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절기 보행자를 위한 도로옆에 계단 설치 - 하수도 설치 시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계 - 마조로 1길 접속부분에 대하여 절토 검토 필요(구배조정) - 경사가 심한 도로이므로 장래 일방통행 검토 - 마조로 19길 접속부분 도로 선형의 종단구배에 대하여 검토 필요 	

■ 향후 계획

- 상기 검토의견에 대하여 용역사로 하여금 재검토 반영하여 검토결과를 우리구에 보고토록 하고,
- 검토의견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도로개설사업 추진 시 반영코자 함.

붙임 1. 건설기술 자문위원회 개최 전경사진 1부. 끝.